

#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www.open.go.kr](http://www.open.go.kr)



"고객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최고 공기업"

**가평군시설관리공단**

GAPYEONG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목 차

I. 정보공개제도 일반 .....	1
① 정보공개제도 목적 .....	1
②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	1
③ 정보공개제도 개념 .....	1
④ 정보공개법상 ‘정보’ 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2
⑤ 정보공개 원칙 .....	2
⑥ 정보공개 대상기관 의무 사항 .....	3
II. 정보공개청구 절차별 안내 .....	4
① 정보공개청구 개요 .....	4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 .....	7
III. 공개 · 비공개 판단 .....	16
① 비공개 정보 판단 절차 .....	16
②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17
③ 공개 · 비공개 사례 소개 .....	25
IV. 기타 청구처리 .....	27
① 정보부존재 .....	27
② 동일 · 반복 청구의 종결처리 .....	30
③ 타기관 이송 .....	30
④ 진정 · 질의 처리 .....	30
V.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	31
[붙임 1]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	34

# I

## 정보공개제도 일반

### 1-1 정보공개제도 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일반적 청구권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
개별적 청구권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청구권(대법원 97누5114)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1-2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

### 1-3 정보공개제도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sup>1)</sup>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b>청구에 의하여</b> 공개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b>청구 없이도</b> 자발적으로 공개

※개념소개

- ① 행정정보 공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 ② 원문공개제도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원문을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1)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

## 1-4 정보공개법상 ‘정보’ 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① ‘정보’ 중 ‘문서’에는 결재를 득한 문서만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직무상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다면 ‘문서’에 해당합니다.(법령 해석례 12-0188)
- ②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없으나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쉽게 가공이 된다면 ‘정보’인가요?  
-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그러한 작업이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두6001)
- ③ 타 기관에서 생산하여 배포한 문서도 우리 정보가 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배포받아 직무상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정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7구합 31478)

## 1-5 정보공개 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일반법으로서의 정보공개법)

## 1-6 정보공개 대상기관 의무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청구권리 존중, 정보관리체계 정비 등(법 제6조)
  -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 및 적정 담당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보의 적절한 보존, 신속한 검색체계 유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등
- 사전행정정보 공표(법 제7조, 영 제4조)
- 문서목록 작성·비치 및 공개, 정보공개장소 확보(법 제8조, 영 제5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 서식, 수수료 등 편람 작성·비치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공개
  - 다만, 목록(제목) 자체가 법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  
예)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에 대한 불시단속계획 등 목록 자체의 공개로 해당업무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의 비위 사실 통보 등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 제8조2)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법 제9조제3항)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영 제11조의2)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교육
  -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유지(영 제16조)

## II

# 정보공개청구 절차별 안내

## 2-1 정보공개청구 개요

### □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 □ 정보공개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주요 판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상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울행법 2005구합10484)
- ②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4두9349)
- ③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자체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법령 해석례 07-0376)

## □ 정보공개 청구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

- 청구방법: 직접방문, 정보통신망, 우편, 팩스
- 청구서 기재항목: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말로써 청구 시, 담당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전화청구의 가능여부: **불가**
  - ※ 말로 청구하는 경우는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병이나 문맹, 기타 이유 등으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청구 방법을 의미함
- 정보공개청구의 신청 및 처리결과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가능

## □ 정보공개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주요 판례**

-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택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음
- ②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공개방법을 열람을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2003두 8050)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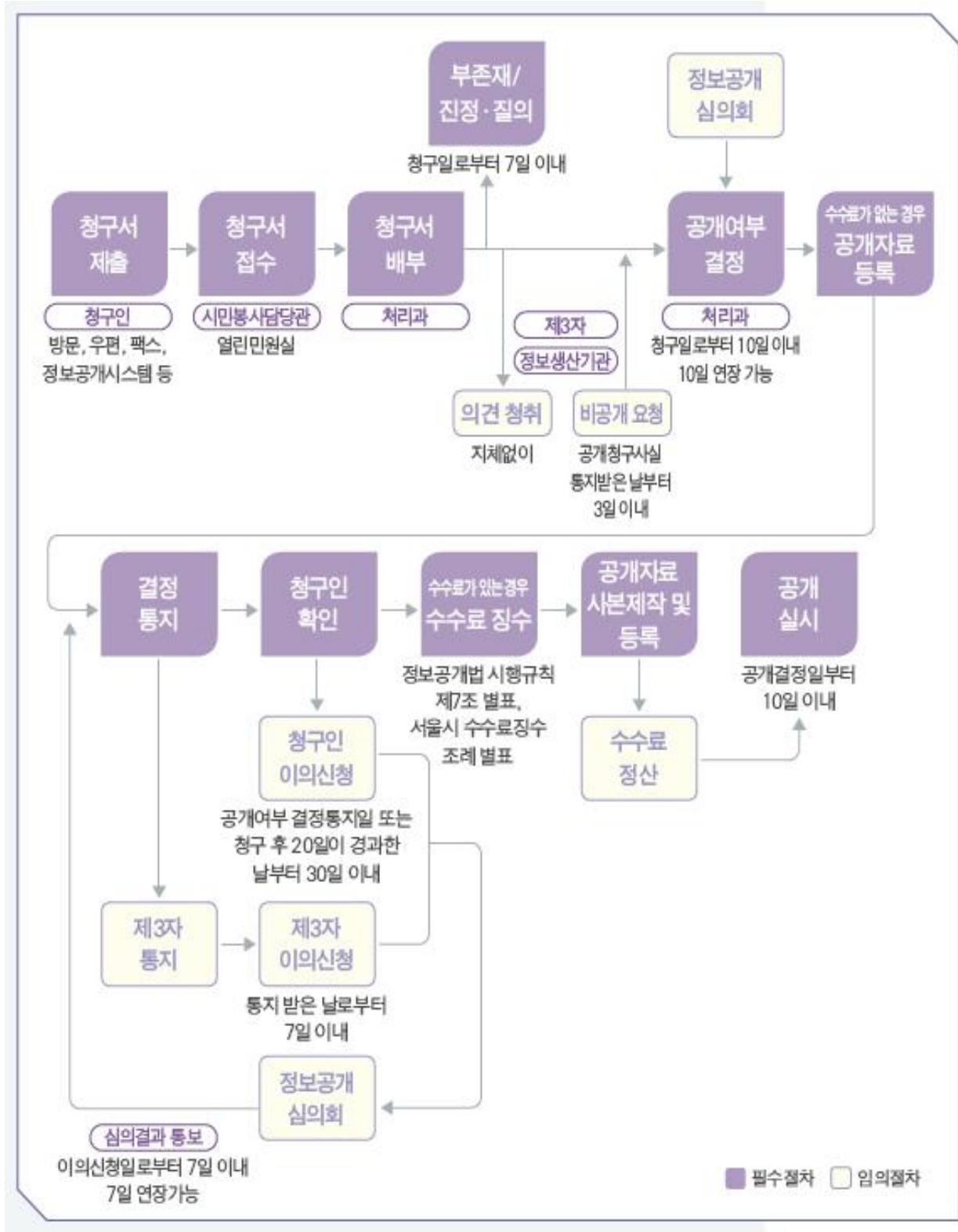
-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이나 청구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7일 내 처리 권장
  -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 처리기간 기산: 초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고, 토요일·공휴일은 미 산입
- 처리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 시: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 시: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연장사실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청구된 내용이 한꺼번에 처리하기에 양이 많고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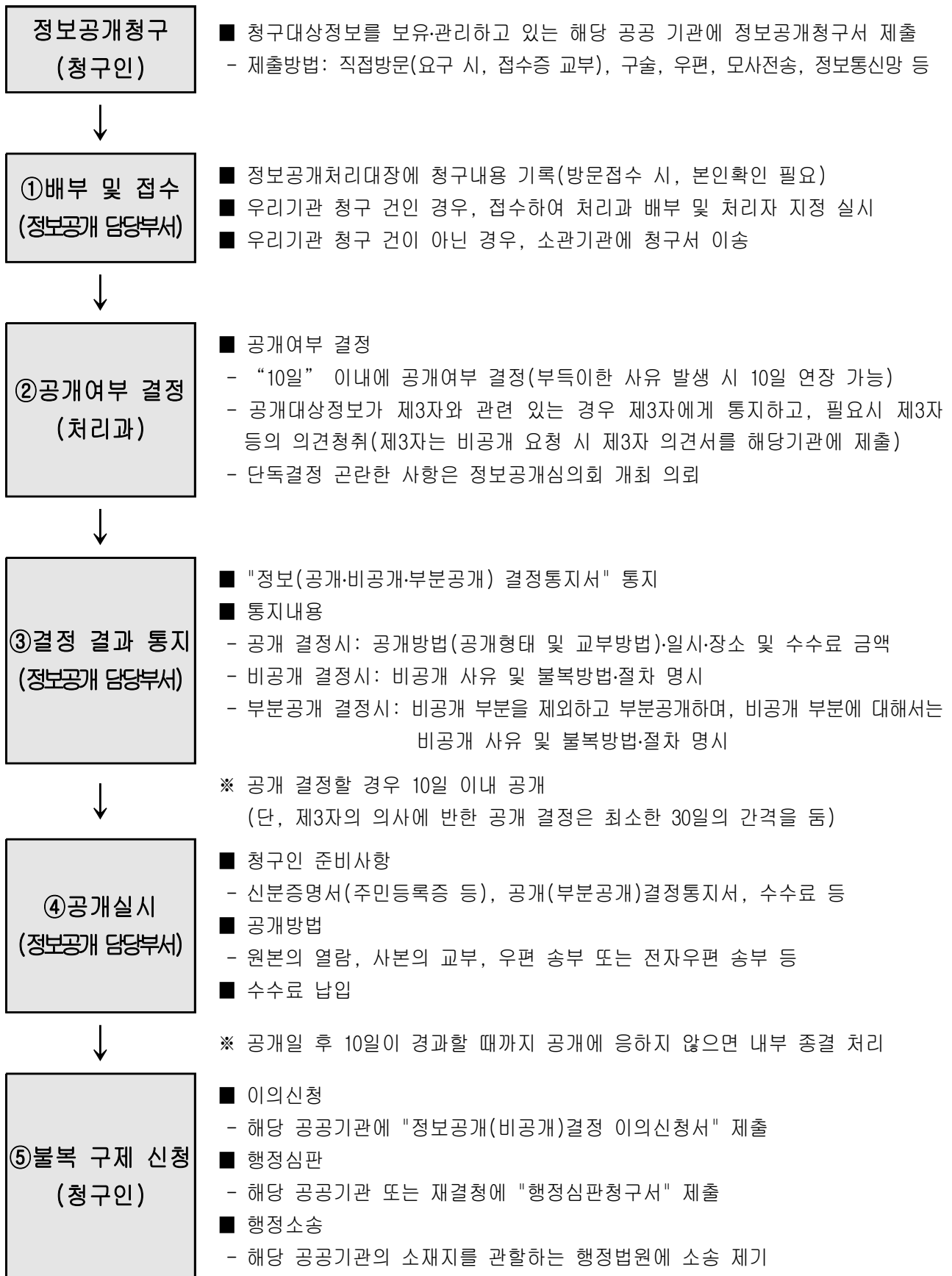


## 2-2 정보공개청구 처리

□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흐름도



□ 단계별 주요 처리사항



## 1 정보공개청구 배부 및 접수

-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의 접수자가 정보공개시스템 입력을 통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4호)에 기록하고 접수증 교부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 생략 가능(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 청구된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진정·질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으로 처리
  - 민원처리 사유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의 통지서 교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정보공개 청구 보완 및 청구 취하 안내

- ① 정보공개 청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문서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하고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미 산입 처리
- ② 청구취하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별도 취하원 양식은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부존재 등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자체 종결 처리 가능(시행령 제6조제5항)

### ※주요 판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 경우로, 동일성 여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법령 해석례 11-0134)

- 다만, 우리기관 청구 건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함(법 제11조제4항). 이송 후 청구인에게 이송기관명, 이송사유 및 이송일시 등을 포함한 기관이송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2서식)를 교부

## 2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청구내용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사유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b>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b>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b>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b>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b>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b>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b>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b>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b>개인에 관한 사항</b> 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b>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b>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b>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b>

### ※주요 판례

- ① 비공개 결정 시,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6두4899)  
-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로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 등을 비교·형량하고, 개별 법령의 공개여부 관련 조문,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의견청취(제3자, 정보생산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자의 의미는 우리기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입증함
- 제3자의 의견청취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8두8680)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이 없으나,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
- 제3자 의견청취 시,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제3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점을 청구자에게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문서로 통지해야 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이에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 ※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보장(법 제21조제3항)
  - ※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법 제21조제2항)

### 3 결정 결과 통지(결정통지서)

#### ● 공개여부 결정유형

- 구분: 공개(즉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 즉시공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로,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함
-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시 결정통지서는 청구인이 결정통지서를 통해 기재된 내용의 비공개 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비공개 근거조항,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 등)

#### ● 청구인 신원확인 필요한 경우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시행령 제15조제3항)
-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청구인과 요청대상자가 상이할 경우)는 공개여부 결정 전 신원확인을 실시하여 필요 시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 공개형태

- 공개방법 및 교부방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변경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제2항)
  - ※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복제물 제공(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

#### ● 공개자료 등록

-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공개자료 파일첨부(5개 이내, 20MB 이내)

#### ● 공개일시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시행령 제12조)
-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제21조제3항)

- 수수료: 결정통지서 자체는 수수료 없음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개별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 수수료 금액은 「가평균 정보공개 조례 별표 2」(붙임 1)에 따름
  - 수수료 과다 발생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 통지 전 청구인에게 사전 안내

**\*수수료 감면 가능**

-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②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면신청 소명자료 확인**

-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②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출받아야 함

- 납부일
  -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 납부일을 정함 (시행령 제12조제2항)

## 4 공개 실시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를 접수·생산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 결정
- 가평균 시설관리공단 결정유형(공개/부분공개/비공개/기타 등)에 따른 결재
  - ☞ 모두 정보공개 주관부서 팀장 결재
- 정보공개시스템 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

5

**불복 구제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 간	비공개결정 이후 30일 이내	비공개결정 이후 90일 이내	비공개결정 이후 90일 이내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한 공공기관</li> <li>✓ 이의신청서 제출</li> <li>✓ 정보공개시스템 이용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li> <li>✓ 행정심판청구서 제출</li> </ul>	행정법원
결정통지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 범위로 연장가능)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로 연장가능)	알 수 없음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li> <li>✓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li> <li>✓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됨(행정심판은 간혹 오래 걸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구제수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li> </ul>

● 이의신청

- 의 의: 해당기관에 다시 한 번 심의를 요구하는 절차

- 이의신청 제기권자

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 비공개 결정통지 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

②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해당 제3자

☞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민법 제6장에 따라 초일 불산입, 공휴일 산입(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만료일은 그 익일로 함)하여 산정

- 신청방법

① 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②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 결과조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법 제18조제2항)

① 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② 단순·반복적인 청구

③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정보공개법 제외법령)



●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기권자

- 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 ②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③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해당 제3자

- 행정심판 제기기간: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

-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②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 필요

- 행정심판위원회 설치기관: 행정심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문의·확인 후 처리

- 신청방법

- ① 문서(심판청구서 서식)
- ②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재결기간: 재결은 재결청(직근 상급행정기관)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 (법령 해석례 06-0058)

●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권자: 행정심판 제기권자와 동일

- 행정소송 제기기간: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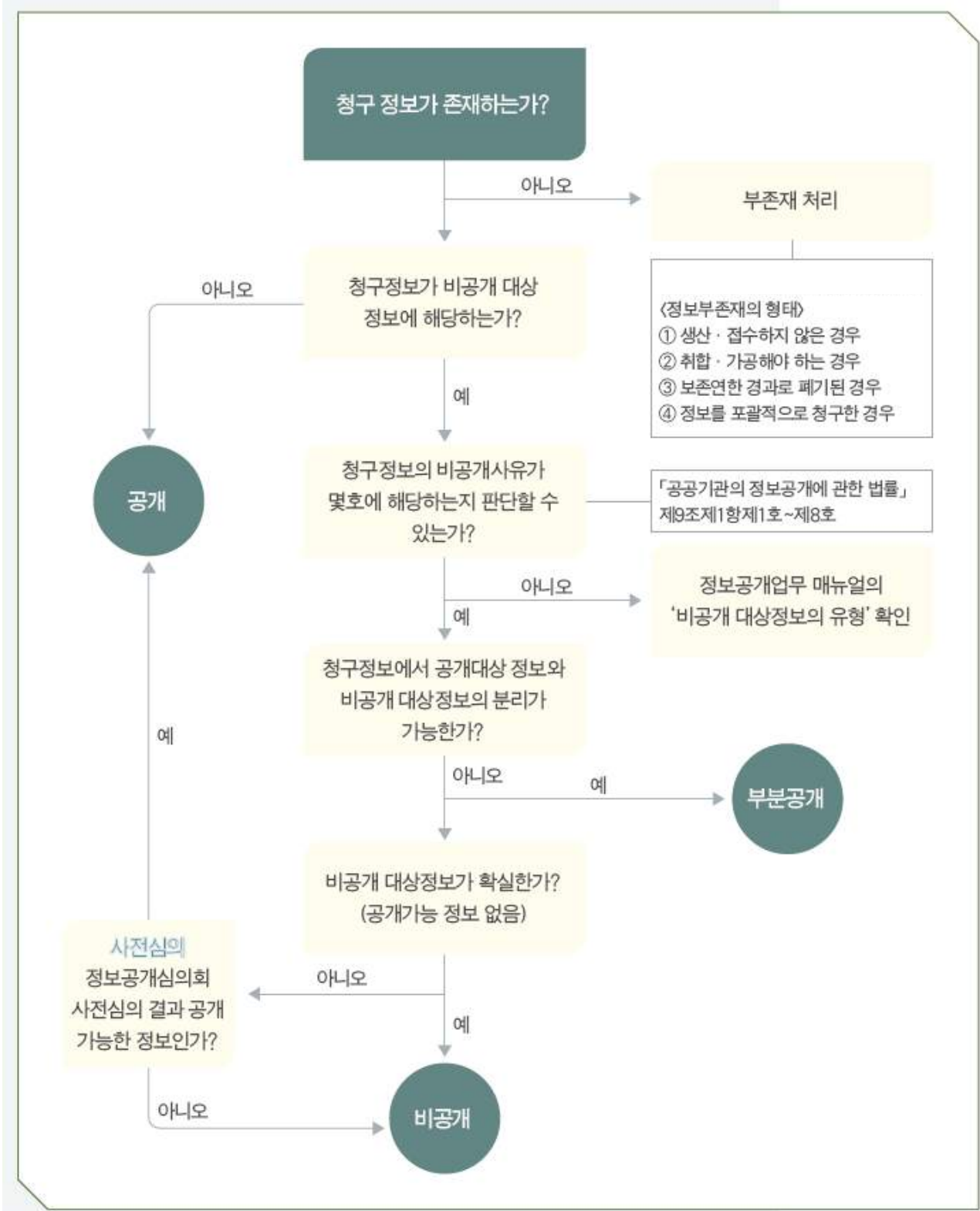
-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②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다만, 제3자의 경우, 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개 실시일을 감안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3-1 비공개 정보 판단 절차



### 3-2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b>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b>	
제 1호: <b>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b>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12항목)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제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망 경로(IP대역)</li> <li>✓ 시스템 보안 솔루션</li> <li>✓ DB 테이블 구조</li> <li>✓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li> <li>✓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li> <li>✓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li> <li>✓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li> <li>✓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li> <li>✓ 시스템 로그파일</li> </ul>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비밀기록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취급인기자 성명</li> <li>✓ 암호자재</li> <li>✓ 비밀기록물 분류사유</li> </ul>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 개연성이 있음
귀빈참석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li> </ul>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li> <li>✓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li> <li>✓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li> <li>✓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li> </ul> </li> </ul>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시설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관리 시설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다른 위험성이 현저히 않으므로 공개</li> </ul> </li> <li>✓ 시설물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관련 정보</li> <li>✓ 경비 위치</li> <li>✓ 당직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li> <li>✓ 순찰일지</li> <li>✓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li> <li>✓ 당직명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li> </ul> </li> </ul>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li> <li>✓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li> <li>✓ 비축물자 보관장소</li> <li>✓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li> </ul>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제 3호: 공개될 경우 <b>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b>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li> <li>✓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li> </ul> </li> <li>✓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li> </ul>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li> <li>✓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li> </ul>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민의 재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 인감,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li> </ul>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li> <li>✓ 특정 지번의 매매가</li> <li>✓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li> </ul>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제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b>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b>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li> <li>✓ 청구서</li> <li>✓ 답변서</li> <li>✓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li> <li>✓ 소송 대응방침</li> <li>✓ 증거자료</li> <li>✓ 준비서면</li> <li>✓ 법률자문 결과</li> <li>✓ 사실조회 결과</li> <li>✓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 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li> </ul> </li> </ul>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li> <li>✓ 수사진행절차</li> <li>✓ 수사의견서</li> <li>✓ 참고인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li> </ul> </li> </ul>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p>제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b>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b>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시감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li> </ul> </li> </ul>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li> </ul>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감독·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시 지도점검계획</li> <li>✓ 불시 조사·단속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li> </ul> </li> </ul>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li> </ul>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li> </ul>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li> </ul>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li> </ul>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비비위에 후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li> </ul>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공고 후 공개</li> </ul> </li> </ul>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확정 후 공개</li> </ul> </li> </ul>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중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완료 후 공개</li> </ul> </li> </ul>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li> </ul> </li> </ul>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li> <li>✓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li> </ul>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li> </ul>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li> <li>-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li> </ul> </li> </ul>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입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li> </ul>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li> </ul>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li> </ul>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li> <li>✓ 인사위원회 회의록</li> </ul>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p>제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b>개인에 관한 사항</b>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p> <p>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p> <p>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p> <p>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전화번호(개인용)</li> <li>✓ 자택주소</li> <li>✓ 개인 이메일 주소</li> </ul>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li> <li>✓ 신용카드번호</li> <li>✓ 통장계좌번호</li> </ul>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li> <li>✓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li> </ul>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출후보자 명단</li> <li>✓ 개인의 징계내역</li> </ul>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li> <li>✓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li> </ul>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후보자 명부</li> <li>✓ 학력 및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li> </ul> </li> <li>✓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li> <li>✓ 신원조사</li> <li>✓ 퇴직사실 확인</li> <li>✓ 인사기록카드</li> </ul>	<p>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사실 기록</li> <li>✓ 납세내역</li> <li>✓ 재산 및 채무 현황</li> <li>✓ 급여 및 수당내역</li> <li>✓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li> <li>✓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li> <li>✓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li> </ul> </li> </ul>	<p>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업체이지, 업체 직원이 아니며,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li> </ul> </li> </ul>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li> <li>✓ 주민등록번호</li> <li>✓ 휴대전화번호</li> <li>✓ 자택주소</li> <li>✓ 개인 이메일 주소</li> <li>✓ 신용카드번호</li> <li>✓ 통장계좌번호</li> </ul>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li> </ul>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 및 경력</li> <li>✓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li> <li>✓ 자격증 소지 여부</li> <li>✓ 종교</li> </ul>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사실 기록</li> </ul>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 및 소득내역</li> <li>✓ 재산 및 채무 현황</li> <li>✓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li> <li>✓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li> </ul> </li> </ul>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li> <li>- 제3자 특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li> </ul> </li> </ul>	

제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기업 ·위탁업체·개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li> <li>✓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li> <li>✓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li> <li>✓ 사단법인의 사원명부</li> <li>✓ 예산서</li> <li>✓ 총사업비</li> <li>✓ 지급계획</li> <li>✓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li> <li>✓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li> <li>- 공역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li> </ul> </li> </ul>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li> </ul>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법인·단체·기업 ·위탁업체·개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li> </ul>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자금</li> <li>✓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li> <li>✓ 영업상의 정보</li> <li>✓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li> <li>✓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li> </ul>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li> <li>✓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li> </ul> </li> </ul>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제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사항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①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나요?
  - 아닙니다.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②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보목록상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 3-3 공개·비공개 사례 소개

- 공개·비공개 결정 시,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해당여부를 모두 검토한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정함
- 주요 사례 소개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대상

사례	결정	결정이유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 공개대상 정보로 성명·직위만 명시되었으나,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은 위 성명·직위에 준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정보에 해당
교육대상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이 포함된 문서 ※ 유사사례: 출장, 행사지원, 초과근무 등	공개	공무원의 교육 참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정한 공무원 직무수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는 생년월일, 거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직위 ※ 유사사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비공개	연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함

- 공익상 필요에 의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및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공개대상

사례	결정	결정이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소속과 직위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마목에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의 성명·직업은 공개대상이며, 위원의 소속과 직위는 이에 준하여 공개 가능

-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개인정보 ☞ 공개대상

사례	결정	결정이유
본인 동의를 전제로 상훈법 제8조의2에 따라 관보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한 훈포장 수상자 정보(성명, 소속, 포상명, 포상일자)	공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음
국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자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된 국적회복허가 고시 관보 게재 의뢰 문서	비공개	위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비공개대상

사례	결정	결정이유
문서 제목에 민원인 성명을 포함	비공개	비공개 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목록이 정보공개법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성명을 문서 제목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성명이 포함된 문서목록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도 안 됨.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부결재 문서	비공개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개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비공개	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IV

# 기타 청구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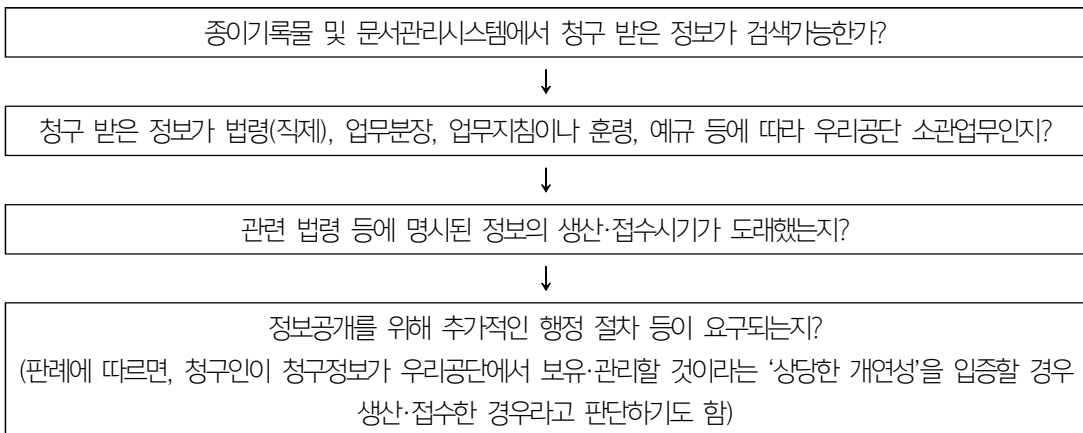
## 4-1 정보부존재

- 개념: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등 청구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보다는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 ※ 만약, 공개(비공개)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혼합된 경우, 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되 부존재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 정보부존재 통지는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은 아니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가능
-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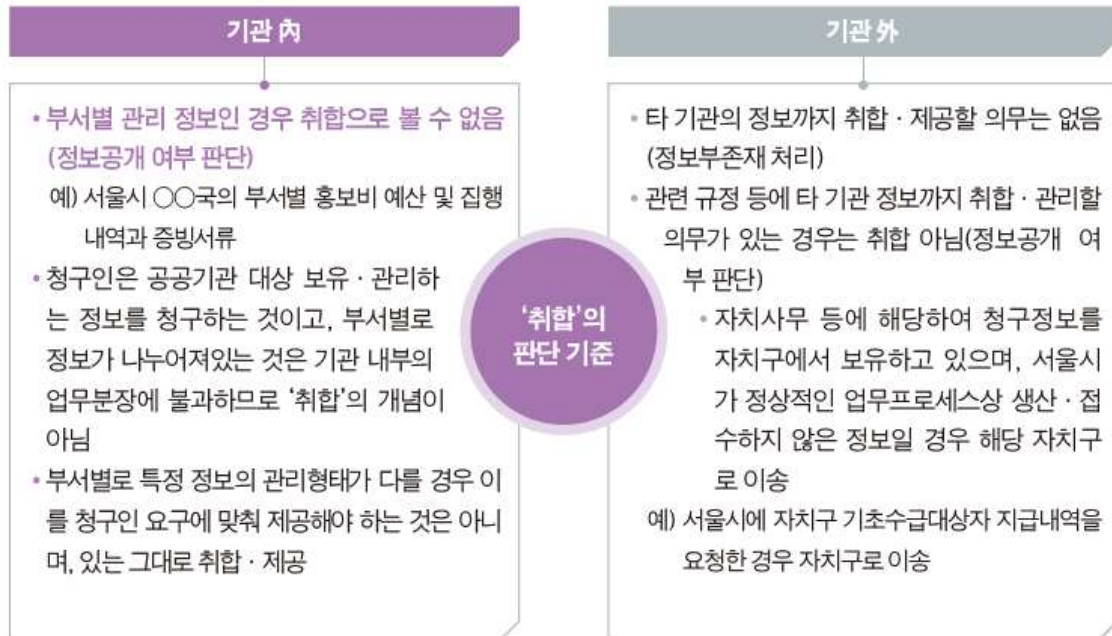
###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 위의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타기관 이송 혹은 정보부존재 처리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취합’의 판단기준



- ‘가공’의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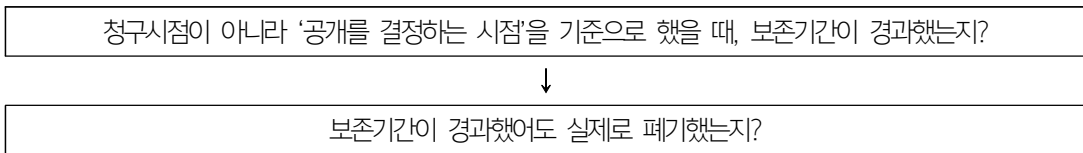
구분	형태 변환	추출	조합
비전자	전자적 형태로 변환 ✓ 스캐너 이용 ⇨ 공개 ✓ 엑셀 등 변환 ⇨ 부존재	(기존)인·허가 서류별 관리 → 층수별, 회사별 통계	(기존)日별 관리 정보 → 年별 관리 정보
		(既 관리방식과)다른 기준으로 가공(부존재)	
전자	비전자 형태로 변환 ⇨ 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無 ⇨ 부존재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有 ⇨ 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無 ⇨ 부존재	

구분	부존재 해당여부	사례	
형태 변환	비전자 → 전자	X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형태로 요청한 경우 → '가공X'
		O	문서작성프로그램(ex: 엑셀, 한글 등)으로 변환하여 요청한 경우 → '가공O'
	전자 → 비전자	X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 가능 → '가공X' ex: 엑셀로 추출하기만 하면 됨
		O	변환 시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되는 경우 → '가공O' ex: 녹음파일 형태의 녹취록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한 경우

구분		부존재 해당여부	사례
추출	비전자 정보 추출	X	기존에 층수별 인·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 정보가 있는데 해당 정보를 요청한 경우 → '가공X'
		O	입사원서를 제출자 출신지·대학별·소지 자격증별 추출 → '가공O'
	전자 정보 추출	X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전산정보 추출이 가능한 경우 → '가공X'
		O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無 전산정보(ex: 범죄통계시스템에서 직업별 범죄 통계는 지원하지 않는데 現국회위원 중 범죄자정보 추출) 요구하는 경우 → '가공O'
조합	비전자 정보 조합	X	기존에 日별로 관리하던 근무일지를 연도별로 요청 → '가공X'
		O	기존에 日별로 관리하던 근무일지를 근무자 이름별로 요청 → '가공O'
	전자 정보 조합	X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 가능 → '가공X'
		O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無 전산정보(ex: 동별로 관리하는 특정범죄 발생률을 초등학교 특정 반경 내의 발생률) 요구하는 경우 → '가공O'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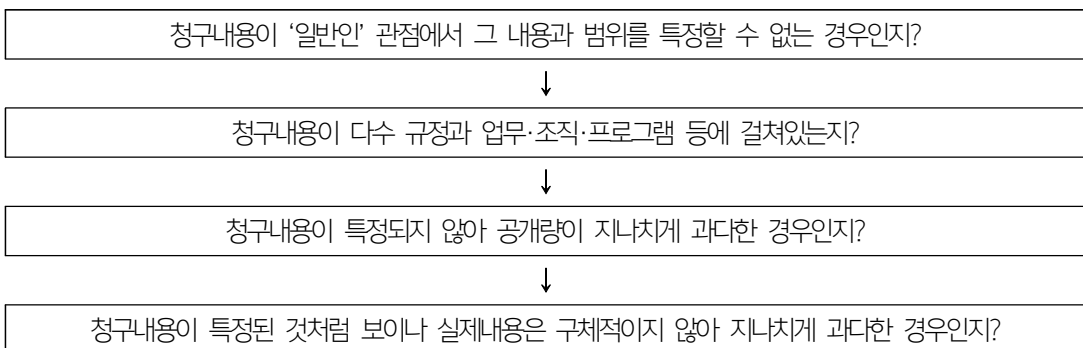
- '보존기간 경과' 및 '폐기' 판단기준



- 위의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타기관 이송 혹은 정보부존재 처리
- 해당 사유로 정보부존재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안내해야 하며 보존기간 내에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리하여야 함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위의 판단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보부존재 처리

## 4-2 동일·반복 청구의 종결처리

- 개념: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부존재 등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자체 종결 처리 (시행령 제6조제5항)

※ 종결처리 시에는 해당 청구의 취지나 목적 등을 중심으로 ‘동일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공개 처리해야 함

- 처리절차: 내부 결재 후 종결처리
- 정보공개시스템 상 입력한 종결처리 사유는 청구인이 처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4-3 타기관 이송

- 개념: 우리 공단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로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즉시 이송처리
- 처리절차
  - 일반적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부 결재 후 이송
  - 일부 정보만 타 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 ‘타기관 동시처리’ 기능 이용
  - 정보공개시스템 상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 ‘문서이송(오프라인)’ 기능 이용하여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송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으로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안내 후, 종결처리

## 4-4 진정·질의 처리

- 개념: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단순 진정·질의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시행령 제6조제3항)
- 처리절차: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
- 처리기간: 질의·상담·고충 민원 7일 이내, 법령 해석 14일 이내



사이트명	소 개	URL
정보공개포털	전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총괄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포털'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확인, 원문정보검색, 사전공개정보 확인을 비롯해 각급기관의 정보공개 규정 및 지침들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국의 시립대도 포털에 추가되어 정보공개청구가 쉬워졌습니다.	<a href="http://www.open.go.kr">www.open.go.kr</a>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최초로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정보소통광장에서는 서울시의 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서 서울시의 정책관련정보, 일반 통계정보, 역사정보, 재정정보, 업무추진비, 주요 사업백서, 결재정보, 위원회 정보, 회의 및 행사정보, 예산 설명서, 연구용역보고서 등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opengov.seoul.go.kr/">http://opengov.seoul.go.kr/</a>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우리나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조례), 학칙 등 제도 및 규정과 관련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외에 법원 판례나 행정심판 해석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law.go.kr">www.law.go.kr</a>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파일 다운로드 또는 Open API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발행하는 백서, 주제별 전문기가 선정한 최신 이슈와 관련된 지식, 지역/분류체계/제공기관/활용방법 별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a href="http://www.data.go.kr">www.data.go.kr</a>
프리즘 (정책연구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정보(발주기관/용역수행기관/연구결과보고서/연구결과평가보고서)를 볼 수 있고 현재 입찰 중인 연구용역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연구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며, 비공개인 보고서들의 경우는 용역을 발주한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a href="http://www.prism.go.kr">www.prism.go.kr</a>
클린아이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하철, 택지개발, 공공시설운영 등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www.cleaneye.go.kr">www.cleaneye.go.kr</a>

사이트명	소 개	URL
e-나라지표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각종 국정통계에 대해 정확한 통계와 추이, 통계의미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시민들에게 필요한 국정통계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무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표를 주제별, 부처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www.index.go.kr">www.index.go.kr</a>
국가통계포털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은 국내 정보뿐만 아니라 국제, 북한의 주요 통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 사회, 환경에 관한 1,000여 종의 국가승인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 금융·경제에 관한 IMF, Worldbank, OECD 등의 최신 통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www.kosis.kr">www.kosis.kr</a>
대학알리미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 교육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지만, 대학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각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academyinfo.go.kr">www.academyinfo.go.kr</a>
학교알리미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인 학교알리미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실태를 파악하여 학교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기준에 따라 학생, 교원의 현황, 시설 및 재정의 현황, 급식현황, 학교폭력 발생현황 등 학교의 주요정보를 제공합니다.	<a href="http://www.schoolinfo.go.kr">www.schoolinfo.go.kr</a>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평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진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과 그 사업을 위해 쓰이는 예산을 분석하는 곳으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nabo.go.kr">www.nabo.go.kr</a>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와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니 이 시스템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검색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alio.go.kr">www.alio.go.kr</a>

사이트명	소 개	URL
<p><b>내고장알리미</b> (지방행정정보시스템)</p>	<p>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행정 현황 및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지자체성과, 지방행정통계, 지자체비교 평가, 행정지표현황, 회계정보, 조직관련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전국 행정구역의 일반현황(인구수, 세대수, 행정구역면적 등)과 복지현황, 행정현황, 교육문화현황, 주민안전현황, 주민안전, 경제현황, 환경관리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지자체별, 지표별 비교 및 분석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www.laiis.go.kr">www.laiis.go.kr</a></p>
<p><b>나라장터</b></p>	<p>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공공 분야의 물품·시설·용역·외자·리스·비축 등에 대한 발주와 입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a href="http://www.g2b.go.kr">www.g2b.go.kr</a></p>

## 붙임 1) 【별표 2】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li>-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li> <li>·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li> </ul> </li> </ul>
M/F필름 · 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회: 500원</li>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li> <li>-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간행물명	2020년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발행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백병선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53
제작	경영지원팀 팀장 이수동 경영지원팀 주임 권현진
문의전화	031) 8078-8039
팩스	070) 8250-0395